

창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108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10811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133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D

변론 종결 2024. 10. 25.

판결 선고 2024. 12. 2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133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22. 6. 30. 접수 제166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E의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23라10534 결정), 2024. 4. 3. 확정된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의 항소이유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이진석

판사김상욱

별지